인천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단2392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송수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이현아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22. 2. 24. 접수 제80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22. 2.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제○항 기재 부동산을 제○항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2. 24.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2022. 2. 22.을 기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은데,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을 다투지 않았다(즉 피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외에도 C의 적극재산이 더 존재한다고 주장 · 입증하지 않았고,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이 더 높다고 주장 · 입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C의 원고, 피고, D조합에 대한 각 채무액이 더 낮다고 주장 · 입증하지 않았다).

1. C의 적극재산

가. 제1항 부동산(5억 9,006만 원)1) 나. 제2항 부동산(3억 5,356만 원)

다. 제3항 부동산(1,612만 원)

라. 제4항 부동산(1,160만 원)

합계 9억 7,134만 원

2. C의 소극재산

가. 원고에 대한 채무(10억 1,303만 원)

나. 피고에 대한 채무(9억 7,340만 원)

다. D조합에 대한 채무(5억 6,300만 원2) 이상)

합계 25억 4,943만 원 이상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1,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2항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표 제2의 가항의 10억 1,303만 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은 2022. 2. 22.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만 제2항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피고는 제2항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2022. 2. 22. 당시 선의였다고, 즉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리라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12, 15,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는 2021. 8.경 제1, 3, 4항 부동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1. 8. 2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강제경매 사건에서 원고는 2021. 9. 23. C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양천세무서, 서초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삼세무서, 근로복지공단, 서귀포시도 2021년 9~11월에 C에 대한 교부청구서 내지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제2항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2022. 2. 22.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그렇다면 제2항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제2항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4)

판사 윤영석

1) 만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2) 2억 4,800만 원 + 3억 1,500만 원

3) 원고가 주장하는 C의 소극재산은, C의 원고, 피고, D조합에 대한 각 채무 외에도 더 많으나, 더 기재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굳이 더 기재하지 않는다.

4) 원고는 제2항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사해행위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C에게 제2항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